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4. 06. .
제 출 자 : 이 천 시 장

□ 개정이유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내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2004.3.5일 근로자종합복지회관내에 이전됨에 따라, 현행 조례명 및 조문을 개정 하고자함.

□ 주요골자

○ 조례의 제명중 “노인·아동”을 “노인”으로 변경

○ 용어정리 및 관련법조문 수정(안 제1조 내지 제4조)

○ 제3조 제3호의 “어린이집”을 삭제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중 “노인・아동”을 “노인”으로 한다.

제1조중 “이천시노인・아동”을 “이천시노인”으로하고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을 “이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한다.

제2조중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을 “이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한다.

제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호중 “노인・아동의 여가선용”을 “노인의 여가선용”으로하고, 동조제3호중 “노인・아동 사회교육”을 “노인 사회교육”으로하며, 동조제4호중 “노인・아동문제”를 “노인문제”로 동조제5호중 “노인・아동 복지향상”를 “노인복지향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 운영조례	이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노인・아동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노인----------노인---------.
제2조(위치 및 명칭) 복지회관은 이천시 중리동 산20번지의1, 21번지의1에 두며 이천시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이라 칭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 ----------노인----------
제3조(시설) 복지회관에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둔다. 1.(생략) 2.(생략) 3.어린이집 4.(생략) 5.(생략) 6.(생략) 7.(생략) 8.(생략)	제3조(시설) ----------.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삭제) 4.(현행과 같음) 5.(현행과 같음) 6.(현행과 같음) 7.(현행과 같음) 8.(현행과 같음)
제4조(업무) 복지회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생략) 2.노인・아동의 여가선용 및 활동지원 3.노인・아동 사회교육 4.노인・아동문제에 대한 상담 5.기타 노인・아동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제4조(업무) ----------. 1.(현행과 같음) 2.노인---------- 3.노인 --------- 4.노인---------- 5.---- 노인 ----------